

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<개정 2020. 6. 25.>

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(제7조의2 관련)

부적격 요인	안전성검사 방법	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
B형간염	B형간염표면항원(HBsAg) 검사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. 모두 음성일 것 2. B형간염핵심항체(Anti-HBc)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 가. 완치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나. B형간염표면항원(HBsAg) 검사 결과 및 B형간염바이러스(HBV) 핵산증폭검사(PCR 포함) 결과가 음성일 것 다. B형간염표면항체(Anti-HBs)의 추가 검사결과가 100mIU/mL 이상일 것
	B 형 간 염 핵 심 항 체 (Anti-HBc) 검사	
	B형간염바이러스(HBV) 핵산증폭검사[중합효소연쇄반응(PCR) 포함]	
C형간염	C형간염바이러스(HCV) 항체 검사	모두 음성일 것
	C형간염바이러스(HCV) 핵산증폭검사[중합효소연쇄반응(PCR) 포함]	
사람T세포림프친화 바이러스 (HTLV)감염증(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)	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 (HTLV) I형/II형 항체 검사	
후천성면역결핍증 (AIDS)	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항체 검사	
	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핵산증폭검사[중합효소연쇄반응(PCR) 포함]	

비고

1. B형간염표면항원(HBsAg), B형간염핵심항체(Anti-HBc), C형간염바이러스(HCV) 항체,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(HIV) 항체 및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(HTLV) I

형/Ⅱ형 항체의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(EIA)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.

2. 위 검사 방법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.